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99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4년 4월 5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2. 제안이유

-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율신설기구·한시기구 정비 및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 3급 +7명, 3·4급 △2명, 4급 +10명, 4·5급 △6명

- ▶ (본 청) 3급 +7명, 3·4급 △3명, 4급 +10명, 4·5급 △7명
- ▶ (사업소) 4급 +1명
- ▶ (합의제) 3·4급 +1명, 4급 △1명, 4·5급 +1명

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 5급이하 정원 및 전문경력관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장기결원 감원 및 직군 조정(5급이하 Δ 12, 전문경력관+3)
 - ▶ 서울대공원 동식물관리요원(임기제) 퇴직 대비 인력충원을 위한 전문경력관 다군 조정 사항 포함 (5급이하 Δ 4 \rightarrow 전문경력관 +4)
 - ▶ 물재생센터 위험물취급요원(전문경력관) 장기결원 정원 조정 사항 포함 (전문경력관 Δ 1 \rightarrow 5급이하+1)

다.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

- 본청 Δ 1 \rightarrow 합의제 +1
 - ▶ 합의제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1명)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 없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 ▶ 자율신설기구·한시기구 정비 및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 ▶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됨.
- 변동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율신설기구 및 한시기구 정비와 직급조정에 따른 일반직 정원 조정[3급 +7, 3·4급 △2, 4급 +10, 4·5급 △6]
 - 5급 이하 정원 및 전문경력관의 장기결원 감원과 직군 조정[5급 이하 △12, 전문경력관 +3]
 - 조직·업무 이관에 따라 본청 정원을 합의제 기구 정원으로 이체 [본청 △1, 합의제 +1]

< 정원 조정 내용 >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 무	일반	직 급								전문 경력관	별 정	연 구	지 도	소 방	경 찰	교 육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현 행	19,167	4	10,700	7	26	18	5	259	8	10,220	157	37	410	25	7,434	3	554	
개편 후	19,167	4	10,700	7	26	25 (+7)	3 (△2)	269 (+10)	2 (△6)	10,208 (△12)	160 (+3)	37	410	25	7,434	3	554	

※ 2024. 7. 1. ~ 2024. 10. 12.까지 일반직 4급 계는 270, 5급 이하 계는 10,207로 함

나. 자율신설기구·한시기구 정비 및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3급 +7, 3·4급 △2, 4급 +10, 4·5급 △6)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은 국장급(3급) 기구의 설치 자율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4. 3. 29. 시행, 이하 “기구정원규정”)의 개정 내용을 토대로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자율신설기구 및 한시기구의 정비, 행정기구의 직급 조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기구정원규정 주요 개정사항('24. 3. 29. 시행) >

<p>□ 국장급(3급) 기구 설치 자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별표 1 삭제) (서울 16~18개 限) • 기구 수 상한을 전제로 한 자율신설기구 설치기준 폐지(§9의2 삭제) •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행정안전부 협의절차 폐지하되, 2급 이상의 경우 협의 존치(§21 개정) <p>□ 시·도 2·3급 정원관리 기준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장급 기구설치는 자율화하되, 서울시의 2·3급 정원(14명)을 법령에 명시하여 기구 수 지속 관리(별표2 제1호)
--

- 서울시는 현재 3개의 자율신설기구와 4개의 한시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모든 자율신설기구와 한시기구 중 건축기획관(3급), 균형발전기획관(3·4급)을 일반기구화함.

< 자율신설기구의 일반기구화 내역 >

개정 전		개정 후	
자율	(2·3급) 디자인정책관	담당관*	(2·3급) 디자인정책관 ^{규칙기구}
자율	(2·3급) 복지기획관	국(보조)**	(2·3급) 복지기획관
자율	(2·3급) 경제일자리기획관	국(보조)***	(3급)경제일자리기획관

* 기구정원규정 별표 2 제2호 비고 1

** 기구정원규정 별표 2 제1호 별표 (2·3급 14명)

*** 기구정원규정 별표 2 제1호 별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한시기구의 일반기구화 내역 >

개정 전		개정 후	
한시	(3급) 주택공급기획관	국(보조)*	(3급) 건축기획관
한시	(3급) 균형발전기획관	과장·담당관**	(3·4급) 균형발전기획관
한시	(3급) 자원회수시설추진단	한시	존속 (’24. 8. 19. ~ ’27. 8. 18.)
	(3급) 한강사업추진단(본청 외)		존속 (’24. 7. 17. ~ ’27. 7. 16.)

* 기구정원규정 별표 2 제1호 별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기구정원규정 별표 2 제2호 별표 비고 4(5명의 범위 3·4급)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문제 해결, 정책수요 반영, 기능 조정·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설계 등 시정 핵심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정된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함으로써 3급 7명 증원, 3·4급 2명 감원, 4급 10명 증원, 4·5급 6명을 감원함.
- 이 중 3급 정원 7명 증원의 경우, 국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직급이 조정된 9개 기구(민생사법경찰국,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 주택정책관, 돌봄고독정책관, 교통운영관, 도로기획관, 건설기술정책관, 미래청년기획관) 정원과 이와 함께 폐지되는 2개 기구(약자와의동행추진단, 균형발전기획관) 정원을 상계 처리한 것임.

< 3급 정원 변동 계획 >

3급 (+7)			
(+9)		(△2)	
개편 전	개편 후	개편 전	개편 후
[3·4급] 과장·담당관 민생사법경찰단	[3급] 국 민생사법경찰국	[3급] 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4급] 담당관 약자동행담당관
[2·3급] 자율신설기구 경제일자리기획관	[3급] 국 보조 경제일자리기획관	[3급] 한시기구 균형발전기획관	[3·4급] 담당관 균형발전기획관

[3·4급] 과장·담당관 창조산업기획관	[3급] 국 보조 창조산업기획관	
신설	[3급] 국 보조 주택정책관	
신설	[3급] 국 보조 돌봄고독정책관	
신설	[3급] 국 보조 교통운영관	
신설	[3급] 국 보조 도로기획관	
신설	[3급] 담당관 건설기술정책관	
[3·4급] 과장·담당관 창조산업기획관	[3급] 담당관 미래청년기획관	

- 다음으로 3·4급 정원 2명 감원은 기능 조정 및 직급 격상으로 폐지되는 4개의 기구(민생사법경찰단, 미래청년기획단, 창조산업기획관, 공공의료추진단) 정원과 직급 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2개의 기구(균형발전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원을 상계한 것임.

< 3·4급 정원 변동 계획 >

3·4급 (△2)			
(+)2) 본청 +1, 합의제 +1		(△4)	
개편 전	개편 후	개편 전	개편 후
[3급] 한시기구 균형발전기획관	[3·4급] 담당관 균형발전기획관	[3·4급] 담당관 민생사법경찰단	[3급] 국 민생사법경찰국
[4급] 합의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3·4급] 합의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3·4급] 담당관 미래청년기획단	[3급] 담당관 미래청년기획관
		[3·4급] 담당관 창조산업기획관	[3급] 국 보조 창조산업기획관
		[3·4급] 담당관 공공의료추진단	폐지

- 그리고 4급 정원 10명 증원은 기능 조정·재배치 등으로 폐지되는 11개의 기구(동행정책담당관·동행사업담당관, 공공자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정보공개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 정원과 신설되는 21개의 기구(약자동행담당관, 외국인이민담당관·다문화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저출생담당관 등) 정원을 상계한 것임.

< 4급 정원 변동 계획 >

4급 (+10)			
(+21) 본청 +19, 합의제 +1, 사업소 +1		(△11) 본청 △9, 합의제 △2	
(4급) 담당관 (+9)	기획조정실 (+1) 약자동행담당관 글로벌도시정책관 (+3) 외국인이민담당관 다문화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여성가족실 (+1) 저출생담당관 미래청년기획관 (+2)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사업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2)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도시활력담당관	(4급) 담당관 (△7)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사업담당관 기획조정실 (△1) 공공자산담당관 디지털정책관 (△3)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1) 공공개발사업담당관
	(4급) 과 (△1)		도시교통실 (△1) 교통지도과
(4급) 과 (+10)	복지실 (+1) 고독대응과 시민건강국 (+2) 건강관리과 공공의료과 디지털도시국 (+3) 정보보안과 정보통신과 정보시스템과 민생사법경찰국 (+2) 경제수사과 안전수사과 재난안전실 (+1) 보행환경개선과 주택실 (+1) 임대주택과	(4급) 센터 (△1)	시민건강국 (△1) 감염병연구센터
	(4급) 합의제 (+1)	(4급) 합의제 (△2)	감사위원회 (△1) 인권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4급) 사업소 (+1)	감사위원회 (+1) 청렴담당관		
(4급) 사업소 (+1)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		

- 또한 감원되는 4·5급 정원 6명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직급 간 균형 등을 고려해 신설되는 교통실 교통지도단속반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등 2개와 기능 조정 등에 따라 폐지되는 각 반(저출생정책추진반, 청년정책반·청년사업반, 경제수사대·안전수사대, 국제개발협력추진반, 공공의료추진반, 주거안심지원반)의 정원을 상계 처리한 것임.

< 4·5급 정원 변동 계획 >

4·5급 (△6)	
(+2) 본청 +1, 합의제 +1	(△8) 본청 △8
교통실 (+1) 교통지도단속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인권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1) 저출생정책추진반 미래청년기획단 (△2) 청년정책반 청년사업반 민생사법경찰단 (△2) 경제수사대 안전수사대 국제교류과 (△1) 국제개발협력추진반 공공의료추진단 (△1) 공공의료추진반 주택정책과 (△1) 주거안심지원반

-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구정원규정상 설치 가능한 기구 수의 제한이 삭제되고 국(3급)의 설치가 자율화되면서, 다양한 정책 및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설계가 용이해진 점을 바탕으로 국장급 기구가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기구 수의 상한을 전제로 한 자율신설기구 규정이 삭제되고, 국장급(3급) 한시기구 설치 시 요구되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절차가 폐지되어 자율신설기구¹⁾ 및 한시기구²⁾를 일반기구화함에 따라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5급 이하 △12, 전문경력관 +3)

- 동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5급 이하 정원 12명을 감원하고, 전문경력관 정원 3명을 증원함.
- 먼저 5급 이하 감원 정원 12명 중 9명은 행정기구 폐지에 따른 감원 정원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하부조직인 ‘동행정책담당관’ 및 ‘동행사업담당관’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6급)이 감원되고,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의 폐지 및 기능 이관에 따라 3명(6급)이 감원되며,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및 시민건강국 ‘감염병센터’의 폐지에 따라 각각 2명씩 총 4명(6급)이 감원됨.
- 그리고 나머지 5급 이하 감원 정원 3명은 서울대공원의 사육사 퇴직 정원인 임기제 4명(9급)과 난지물재생센터에 증원된 정원 1명(6급)을 상계한 것임.

1) 기구정원규정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서울시는 최대 3개), 2년 범위의 존속기한,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등의 제한이 있음.

2) 기구정원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한시기구 설치 사유, 존속기한(3년 범위), 연장 1회 제한 등.

< 5급 이하 정원 조정 내역 >

5급 이하 (△12)			
(+1)		(△13)	
난지물재생센터	화공6급(+1)	서울대공원 동물원	농업9급(△4)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행정6급(△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행정6급(△1)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행정6급(△1) 토목6급(△2)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행정6급(△2)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행정6급(△1) 간호6급(△1)

- 또한 전문경력관의 정원은 3명이 증원되는데, 이는 사육사 퇴직 인력을 대체하는 전문경력관 정원 4명(다군, 동물사육)과 일반직(화공 6급)으로 전환하는 난지물재생센터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위험물취급)을 상계한 것임.

<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 내역 >

전문경력관 (+3)			
(+4)		(△1)	
서울대공원 동물원	전문경력관 다군(+4)	난지물재생센터	전문경력관 나군(△1)

- 이 중 동물사육은 전문성과 장기간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인 점을 감안하여, 사육사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 중이며, 2027년까지 총 11명³⁾의 전문경력관 지정 수요가 연차별로 예정되어 있음.

3) 이 점을 고려하여, 작년 제321회 정례회 심의를 통해 조례상 전문경력관의 정원책정기준을 상향한 바 있음[(1.5% → 1.6%(171.2명)].

< 동물사육 분야 향후 정원 조정 계획 >

구 분	'24.7.	'24.하반기	'25	'26	'27
조정인원	60(+4)	63(+3)	65(+2)	66(+1)	67(+1)
조정내역	임기제 △4 → 다군 +4	사육운영7급 △1 임기제 △2 → 나군 +1, 다군 +2	사육운영6급 △1 임기제 △1 → 나군 +1, 다군 +1	사육운영6급 △1 → 나군 +1	사육운영7급 △1 → 나군 +1

- 따라서 사육사의 퇴직 예정 시기를 고려하면 연차별로 연 1~2회의 전문경력관 전환이 필요한바, 전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이를 위해 매년 한두 차례의 조례 개정을 반복해야 하는 점은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서울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난지물재생센터는 전문경력관(나군, 위험물취급요원)이 퇴직한('22. 6.) 이후 신규 채용이 되지 않아 장기결원인 상태⁴⁾로 현재 일반직(화공 6급)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임시 선임하여 운영 중인 바, 이를 반영하여 기존 전문경력관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임(전문경력관 나군 △1 → 일반직 +1).
- 난지물재생센터는 물재생과정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수산화나트륨 등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장으로, 「화학물질관리법」⁵⁾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있고, 미선임 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⁶⁾을 받을 수 있으

4) 2023년도에 진행한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절차에서도 최종 합격자는 없었음('23. 11.).
 5)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제1항제9호 및 제35조제2항제19호.

므로 안정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함.

- 이에 전문경력관의 장기결원 상태를 해소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의무를 해태하지 않기 위해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하겠음.
- 다만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⁷⁾만 선임할 수 있는바, 전문경력관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인사 이동에 따른 후임자 선임 등에서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 운영에 따른 문제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요건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
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998.5.9.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2시간, 자격취득과정)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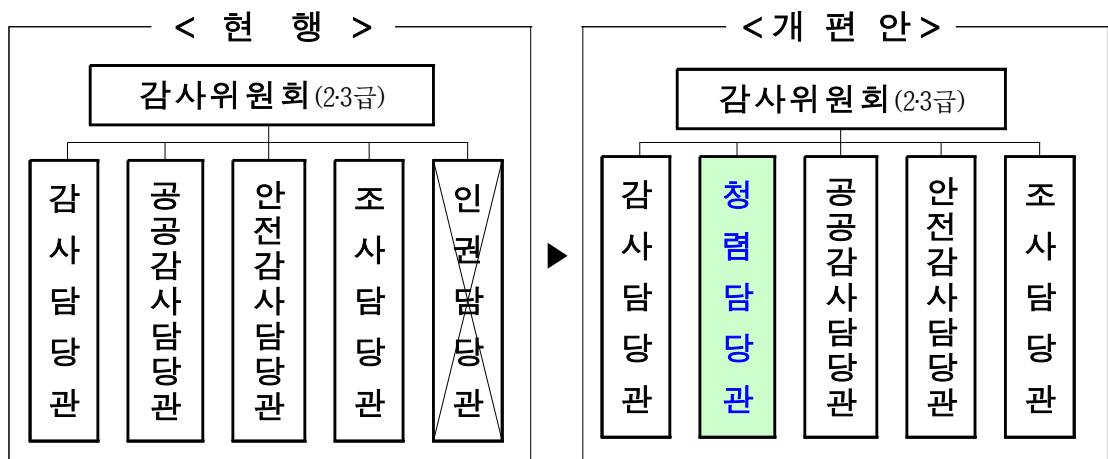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화학 관련 학과 졸업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2시간, 자격취득과정) 이수자

4.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2시간, 자격취득과정) 이수자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라.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본청 △1 → 합의제 +1)

- 동 조직개편안은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인식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하여, 분산된 청렴·윤리 업무를 일원화함에 따라 4급 인력을 보강하고자 본청의 정원 1명을 합의제 기구의 정원으로 이체함(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



- 합의제 기구의 정원은 226명(감사위원회 152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2명, 자치경찰위원회 42명)으로, 동 범위에서 인권담당관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산하로 이관되고 감사위원회 산하에 청렴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원은 청렴담당관 4급 정원 1명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낮은 평가등급('21년 4등급, '22년 3등급, '23년 3등급)을 받는 상황이므로 청렴도 및 반부패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청렴담당관’의 신설을 통해 청렴시책 추진 역량을 집중코자 하는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러한 조직개편 방식은 단순히 감사위원회의 내부 기능을 조정하여 재배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4급 정원 (+1) 추가에 따른 적극적인 청렴 시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체감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그 밖의 사항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별표 4의 하단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일반직 4급 계를 ‘270’으로, 4급 본청은 ‘165’로 하며, 5급 이하 소계는 ‘10,207’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에 따라 기능이 감소한 감염병연구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연구센터장의 임기[2022. 10. 13. ~ 2024. 10. 12., 임기제 4급(개방형)]를 고려하여 임기 만료 전까지 해당 정원을 존속하려는 것임.
- 즉 2024. 7. 1.부터 2024. 10. 12.까지는 감염병연구센터장의 정원(개방형 4급 +1)이 유지되고, 2024. 10. 13.부터는 원래의 정원 조정 내용이 반영됨.
- 이와 같이 감염병연구센터장의 정원이 일정 기간 유지됨에 따라 감염병연구센터의 설치 근거 규정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의 정원 증감 변동은 이번 회기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음.

입법조사관	연락처
성동준	02-2180-8055